

폐기물 재활용 지원제도

1. 서론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2년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폐기물관리법으로부터 분법·제정되었다. 동법은 재활용 관련 업종이나 제품의 업종별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고시와 종전의 예치금제도 외에 부담금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중 대통령이 정한 일부 품목은 판매업자가 수입업자에게 회수·처리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의무사업자의 회수·처리 이행보증을 담보로 사업자에게 정부의 담보금(예치금)을 예치시키는 아주 강력한 제도로 시행하여 오고 있다. 그 결과 1997년도의 생활폐기물 재활용율은 29%로 1992년도에 비하여 3배 이상 증가되었고, 총폐기물 재활용율도 '96년 54.7%에서 '97년 55.3%로 매년 재활용 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동법의 시행규칙 별표 1에 재활용 제품에 대한 품목별 재활용 원료의 배합률에 대하여 규정하고, KS마크, GR마크, 환경마크, 재활용 가능마크, KT마크, NT마크 등의 재활용 관련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재활용 제품의 품질향상 및 재생원료 혼입비율 증대를 통한 재활용 제품의 사용촉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그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제정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병행 실시 함으로써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정책의 요체는 그림 1 에 보이듯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연으로부터의 자원채취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자연으로 되돌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사람의 건강을 보존하는 것이다. 폐기물관리정책의 변화과정은 초기에 단순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청소개념(Cleaning)”에서 시작하여 “재활용(Recycle)”문제로 정책중심이 이동하였으며, 최근에는 “폐기물 최소화 (Waste Minimization)” 개념이 폐기물관리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폐기물 최소화란 폐기물발생억제(Prevention), 감량(Reduction), 재이용(Reuse), 재활용(Recycle), 에너지 회수(Energy Recovery)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매립이나 소각을 통해 최종 처리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생산 단계에서의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제도 폐기물 부담금제도 등을, 유통단계에서의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포장방법, 포장재질 규제와 아울러 포장폐기물 감량대책을, 소비단계에서의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쓰레기 종량제, 음식물 쓰레기 대책, 일회용품 사용억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에 걸쳐 폐기물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폐기물 자원화란 불가피하게 발생한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 제도를 확립하고 적절한 역할 및 책임부담을 통해 재활용 폐기물을 선별 재활용을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재활용 시스템이 적정하게 작동되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예치금제도이다.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폐기물의 발생 및 처분현황이 정확하게 조사되어야 하며 배출원에서의 보관기준, 분리배출기준, 운송기준, 처분기준, 처리기준, 처리시설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폐기물은 일정한 목적(재활용 또는 처리)을 갖고 국제간에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바젤협약”을 체결하여 불법적인 국가간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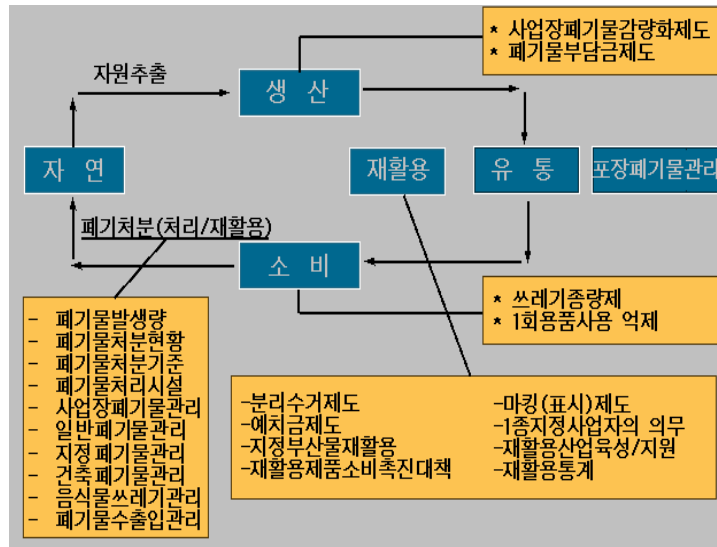


그림 1 폐기물 관리정책

2. 관련 법규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동 법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정의를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되거나 버려진 물품과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나 에너지 공급 또는 토목 건설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품 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자원 재활용 업종, 지정제품 및 지정부산물을 지정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도, 폐기물의 회수, 처리비의 예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비용부담, 제품 혹은 용기판매자와 수입자가 폐기 후 제품 및 용기를 회수 처리하는 규정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제도 등을 마련하였다.

2.2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제는 오물청소법(1961-1977), 환경보전법(1978-1986), 폐기물관리법(1986-)의 발전과정을 거쳐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 관리법은 1995년 8월 개정되어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책임을 강화하고 감시강화를 위해 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체계를 재정립함과 아울러 폐기물 처리업종을 통폐합하고 허가정수 제한제를 폐기하여 경쟁의 기틀을 제고하였고, 생활폐기물에 대한 종량제 실시 촉진근거를 마련하였다.

2.3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관련 정책

3.1 재활용제품 소비촉진 정책

가.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의무구매 확대

- (1) 의무구매 품목확대: 현행 13개 품목에서 슬레그 시멘트, 고무블럭 등을 추가하여 85개 품목으로 대폭확대 (환경부공고 1998-97) : 별표 참조
- (2) 공공기관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348호)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長)은 상기 의무구매 품목 중 현저한 품질저하 및 높은 가격, 공급곤란 등으로 의무구매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의무구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의무구매 품목 외의 재활용제품에 대하여도 최대한 우선 구매 사용한다.

나. 백화점 재활용제품 교환·판매장 설치의무화 확대

- (1) 유통산업 발전법 상의 백화점은 재활용제품(재생노트, 재생화장지, 재생비누, 재생플라스틱 등) 교환·판매장 설치·운영 의무화
- (2) 향후 백화점에 준하는 대규모 점포(도매센터, 쇼핑센터, 대형점등)도 점차 의무화 대상에 포함
- (3) 재활용품 판매부진에 따른 업계의 경영상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유사상품의 일반매장에서 재활용제품(10종이상의 품목과 상품량의 5%이상)을 동시에 취급 가능토록 개선 계획

다. 민간단체활성화를 통한 재활용제품 소비촉진

단체명	주요 활동 내용
한국재활용제품 소비촉진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제품 전용판매장 설치운영 ○ 알뜰매장 상설운영 ○ 재활용제품 전시판매처 설치운영 ○ 의무구매제품 등의 원활한 공급 ○ 재활용제품 홍보
(사)주부환경전국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 베틀시장, 알뜰시장 운영 ○ 백화점내 재활용제품 교환판매지원 ○ 환경보전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전개
(사)환경상품제조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상품의 개발촉진을 위한 기술 및 정보의 수집, 연구, 교류활성화 ○ 환경상품 생산보급 사용의 확대 촉진 ○ 환경상품 대국민홍보

3.2 분리수거제도

가. 마킹시스템

(1) 재질분류표시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금속캔, 플라스틱용기는 재질분류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마크

재활용가능 표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95-23호)에 따라 종이류, 고철류, 유리병류, 플라스틱류,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제품에는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심사를 받아 재활용가능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표 1. 분리수거품목

기본 품목	분리수거가 되는 세부품목	분리수거가 안되는 세부품목	비 고	
종이류	신문지, 책, 종이상자류, 달력, 포장지, 우유팩 등	비닐코팅된 종이류, 테이프, 스프링 등 이물질이 함께 붙어 있는 책자 등		
병류	음료수병, 술병, 드링크병 등	유백색병, 식기, 도자기류, 형광등, 일반유리, 거울 등		
고철류	공구, 철사, 철판, 양은, 알루미늄, 스텐, 구리 등	고무, 플라스틱 등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		
캔류	음. 식료용캔, 방충용캔, 부탄가스용기 등	페인트, 오일 등 유해 물질이 묻어있는 캔 등		
플라 스틱	페트병류	콜라.환타병.생수병 등 음료수병, 식용유병, 장류병 등	불투명한 병 등	*용기표면에 재질 분류 표시가 표기된 제품만 분리수거 가능
	스티로 폴	발포스티렌(EPS) 포장재	발포폴리프로필렌(EPP), 발포 폴리에틸렌(EPE) 포장재, 1회 용 컵라면용기, 1회용 도시락, 수산양식용 폐부자,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타 재질로 코팅된 페스티로폴 등	
	기타 합성수 지 용기류	요구르트병, 세제 용기, 우유병, 김치통 등 가정 생활용품류, 음료수병 상자 등	단추, 재떨이, 식기 등 열에 잘 녹지 않는 제품, 파이프, 장판, 전선,PVC, 유제품, 비닐봉지, 과자 .라면 봉지류, 우산대, 계란받침대, 보행기, 전화기, 두부포장용기, 옷걸이 등	

* 기본품목은 시/군/구에 따라 상기품목 이외에 의류 등이 추가될 수 있으며, 세부품목 역시 시/군/구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3.3 예치금제도

폐기물 예치금제도는 다량으로 발생하는 제품·용기 중 사용한 후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 회수·처리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적정하게 회수·처리한 경우 회수·처리실적에 따라 예치비용을 반환해 줌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deposit refund system)이다.

가. 필요성 및 효과

동 제도는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품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하고 회수·재활용 정도에 따라 단위당 예치비용을 차등화 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거나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을 유도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오염방지과 자원절약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나. 법적 근거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한다.

다. 제도의 취지

- 예치금은 생산자예치금과 소비자예치금의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생산자예치금을 택하고 있다.
- 소비자예치금은 회수에 중점을 둔 것이며, 생산자예치금은 회수뿐 아니라 재활용까지를 고려한 것이다.
- 예치금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 제품부담금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라. 부과대상(14종) : 다음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예치금을 내야 한다.

- 포장용기(4종) : 종이팩/금속캔/유리병/PET병을 사용하는 음식류·주류·의약품·부탄가스제품·세제류
- 전지(2종) : 수은전지/산화은전지
- 타이어(3종)
- 윤활유

마. 예치금의 세입 : 환경개선특별회계

바. 예치금의 용도

- 예치금의 반환
-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회수 및 재활용비용의 지원 등

3.4 재활용 산업육성/지원 제도

가. 자금지원

구분	'94	'95	'96	'97	'98	'99	비고
지원규모	100억원	190억원	300억원	450억원	480억원	500억원	
이율(%)	7	7	6.5	6	8	6.4	
상환기간	3년거치, 5년상환		3년거치, 7년상환				
용자한도액 (억원)	10억원이하			15억원이하			기술개발자금 2억원 이하
지원분야	시설설치, 기술개발 등						

나. 세제지원

- (1) 폐자원 수집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10/1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공제대상 폐자원(11종) : 고철, 폐지, 폐유리병,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유, 폐성유,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 (2) 재활용시설 투자시 소득세액(법인세)공제 또는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세액공제 : 재활용시설 설치비용의 5/100 - 10/100
 - 특별상각 : 재활용시설 설치비용의 30/100 - 50/100
- (3) 재활용기계·기구 수입시 관세감면 대상품목 확대 : 관세법 제28조의 7
 - 국내생산이 곤란한 기계·기구 수입시(22개품목) : 50/100 관세감면

다. 부지확보지원

- (1) 준농림지역에 재활용시설 입지허용(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 (2)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및 재활용제품 제조업을 현지 근린공장으로 지정, 수도권지역내 입지허용(공배법시행령 제34조)
- (3) 자연·생산 녹지지역(보전녹지 제외)에의 재활용시설 입지허용(건축법시행령 제65조)
- (4) 개발제한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집하선별장 및 민간 건축폐재 재활용시설 설치허용

별표 :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의무화 품목 목록

별표 1. 폐지를 주원료로 제조한 재활용제품 목록

제 품 명	규 격	용 도
화장지(두루마리용)	KS M 7107, GR M 7005, EL98-46호(92)/03(2)-TP	위생용
핸드타올	EL98-46호(92)/03(2)-TP	위생용
노트	정부 7510-3117	필기용
봉투(1·2·3호)	조달 7530-약0304	서류발송용
화일표지	KS G 2402	서류편철용
장기보존용표지	조달7530-약0517	서류편철용
신문용지절지/전지	KS M 7101, GR M 7003, EL98-46호(92)/01(2)-PP	윤전식 신문인쇄용
(재생)중질지절지/전지	KS M 7102, GR M 7002, EL98-46호(92)/01(2)-PP	인쇄용
전자복사용지(건식2종)	KS M 7212, GR M 7001, EL98-46호(92)/01(2)-PP	복사용
인쇄용지	GR M 7002, EL98-46호(92)/01(2)-PP	서적·잡지 등 인쇄용
보존복사용지(보존2종)	KS M 7212, 조달7530-약0311, EL98-46호(92)/01(2)-PP	복사용
보존백상지	조달7530-약0311, EL98-46호(92)/01(2)-PP	인쇄용
아트지전지	EL98-46호(92)/01(2)-TP	인쇄용
출판용지전지	EL98-46호(92)/01(2)-PP	인쇄용
교과서용지전지	EL98-46호(92)/01(2)-PP	인쇄용
백판지	GR M 7004	소형포장용박스
전산바인더	KS G 2403	전산기록편철용
(재생)전산기록지	KS M 7221, 조달7530-약0310, EL98-46호(92)/01(2)-PP	전산인쇄용
전산 OCR/OMR용지	EL98-46호(92)/01(2)-PP	전산행정서식용
책표지	KS G 2507	서류편철용
보관문서상자	조달7510-약516	문서보관용
달걀받침판	GR M 7006	계란보관용

별표 2. 폐플라스틱을 주원료로 제조한 재활용제품 목록

제 품 명	규 격	용 도
결재판	조달 7510-약0514	서류결재용
보통전력량계	KS C 1208	일반 전기계량기(가정용·산업용)
수도미터기보호통	정부 4510-085	수도미터기보호용
맨홀(1,2종 통신용1호)	GR M 3001, EL98-46호(92)/04(2)-PR	인도용 및 구내용전기통신용
통신선로보호덮개	EL98-46호(92)/04(2)-PR	통신선로보호용
배수로(1,2종 C형)	KS M 3492, GR M 3002, EL98-46호(92)/04(2)-PR	관개용수로 산악배수용
이중벽구조 배수관	GR M 3006, EL98-46호(92)/04(2)-PR	배수·하수 및 농업용수로용
비탈면보호블럭	KS M 3493, EL98-46호(92)/04(2)-PR	절·성토지보호용
도로용 빗물받이(2종, 대형)	KS M 3494, GR M 3004, EL98-46호(92)/04(2)-PR	지상설치용 빗물받이
경계블럭	EL98-46호(92)/04(2)-PR	인도 및 보도·차도용
온돌배관판넬	KS M 3497, GR M 3007, EL98-46호(92)/04(2)-PR	온돌배관연결용
재생플라스틱판넬	GR M 3008	목재합판대용
욕실용 매트	EL98-46호(92)/04(2)-PR	욕실바닥용
마루바닥재	EL98-46호(92)/04(2)-PR	교실바닥용
마감올타르	EL98-46호(92)/04(2)-PR	미장 및 경량단열재용
모래저장함	KS M 3527, EL98-46호(92)/04(2)-PR	동절기 도로보수용
해가림지주대	KS M 3495, EL98-46호(92)/04(2)-PR	인삼재배용

별표 2. 폐플라스틱을 주원료로 제조한 재활용제품 목록(계속)

제 품 명	규 격	용 도
재생플라스틱두렁	KS M 3496, EL98-46호(92)/04(2)-PR	논두렁용
수목보호판 및 지주대	KS M 3498, EL98-46호(92)/04(2)-PR	수목보호용
가로수보호고무판	KS M 6953, EL98-46호(92)/04(2)-PR	수목보호용
분리수거통	KS M 3528, EL98-46호(92)/04(2)-PR	쓰레기분리수거용
수분제거용기	EL98-46호(92)/04(2)-PR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
파렛트	KS M 3524, GR M 3005, EL98-46호(92)/04(2)-PR	장기간 보관 제품 적재용
계란판	EL98-46호(92)/04(2)-PR	계란운반용
자동차범퍼	GR M 3003	자동차용
상자포장용끈	EL98-46호(92)/04(2)-PR	상자포장용
포장용완충재	EL98-46호(92)/04(2)-PR	화물운송용
사진액자	EL98-46호(92)/04(2)-PR	사진보관용 액자

별표 3. 기타 폐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재활용제품 목록

주 원료명	제 품 명	규 격	용 도
폐 고무류	재생고무블럭	KS M 6951, GR M 6002, EL98-46호(93)/11(2)-RP	어린이, 장애인 이용시설의 보도용 바닥재
	재생우레탄바닥재	KS M 3524, EL98-46호(92)/04(2)-PR	건축자재
	방수슈트	EL98-46호(92)/04(2)-PR	토목건축용 슈트방수제
	방수물타르	EL98-46호(93)/11(2)-RP	방수 마감재
	흡음용고무패널	KS M 6954, EL98-46호(93)/11(2)-RP	건축자재
	충간방음·방진막	EL98-46호(93)/11(2)-RP	충간방음·방진용
	고무제배관받침목	KS M 6955, EL98-46호(93)/11(2)-RP	파이프 배관공사용
폐유리	재생타이어	GR M 6001, KS M 6610	재생타이어
	주택용 단열재	KS F 6305, EL98-46호(93)/10(2)-CM	건물 벽·천정 등 중간단열재
폐목재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 EL98-46호(93)/10(2)-CM	파이프 보온재
	목재성형파렛트	EL98-46호(93)/15(2)-WM	화물받침대
폐 식용유	학생용책상상판	GR F 2001, EL98-46호(93)/15(2)-WM	학생용 책상 상판(1인용)
	재활용 고행세탁비누	KS M 2751, EL98-46호(92)/09(2)-RS	일반세탁용
	재활용 가루세탁비누	KS M 2752, EL98-46호(92)/09(2)-RS	세탁기용, 대형주방바닥청소
	고형주방용비누	KS M 2753, EL98-46호(92)/09(2)-RS	주방식기세척용
	액상주방용비누	KS M 2754, EL98-46호(92)/09(2)-RS	주방식기세척용
	액상화장비누	KS M 2755, EL98-46호(92)/09(2)-RS	세면용
기타	리싸이클 준비누	KS M 2756	세면용
	연소재벽돌	KS L 8520, EL98-46호(93)/10(2)-CM	내외장 조적용
	부생석회벽돌	KS L 8510, EL98-46호(93)/10(2)-CM	내외장 조적용
	폐수처리오니벽돌	EL98-46호(93)/10(2)-CM	내외장 조적용
	부생석회블럭	KS L 8511, EL98-46호(93)/10(2)-CM	보차도용
	벽돌형블럭	EL98-46호(93)/10(2)-CM	보차도용
	폐수처리오니블럭	EL98-46호(93)/10(2)-CM	내외장 조적용
	연소재블럭	EL98-46호(93)/10(2)-CM	내외장 조적용
	고로슬래그시멘트	KS L 5210, EL98-46호(93)/10(2)-CM	건축·토목공사용
	고로슬래그골재	EL98-46호(93)/10(2)-CM	도로공사용
	도로기층용골재	EL98-46호(93)/10(2)-CM	매립지 및 도로기층용
	방수재	EL98-46호(93)/10(2)-CM	분말형 방수물타르
	폐도자기흡음판	EL98-46호(93)/10(2)-CM	도로변·실내흡음용
	암면보온재	EL98-46호(93)/10(2)-CM	건물벽·천정 등 중간단열재
토너카트리지(일체형/분리형)	EL 98-46호(97)/21(1)-TC	레이저 프린터용	